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고 위 공 무 원 단 인 사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방형 직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일반직으로 임용된 공무원에게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여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한편, 주요 국정과제 등 협업과제 수행기간을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응시에 필요한 필수 근무 경력에 산입하여 정부 내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방형 직위 임기제공무원 일반직 전환 시 고위공무원단 승진 요건 신설(안 제7조 및 제9조의2)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 임기제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하고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 위한 근무경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민간 임용자가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나. 협업과제 수행 경력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응시요건 경력에 산입(안 제9조의2)

4급 이상에서 주요 국정 현안과 관련하여 협업과제 수행 경력이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통해 역량평가 응시요건 경력에 산입하여 정부 내 협업 과제 발굴과 기관 간 소통의 기반을 확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예정: 2020. 9.11.~ 10.21.) 결과, 특기할 사
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하고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임용된 사람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력”을 “경력(제6호의 경우 4급 이상에서 경력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정과제 등 주요 국정 현안과 관련하여 행정협업과제를 수행한 경력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통해 인정된 경력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역량평가의 응시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역량평가에 응시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①제8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치고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된다. 이 경우 재직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임용령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재직연수 계산 방식을 준용한다. 1. ~ 5. (생략) <u><신 설></u>	제7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①-----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하고 개방형 및공모직위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임용된 사람</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역량평가의 응시요건) ① 역량평가에 응시하려는 4급 이상 공무원은 역량평가 실시일	제9조의2(역량평가의 응시요건) ① ----- -----

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경력
을 합산한 기간이 재직 중 2년
이상이거나 4급 이상에서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구개
편에 따라 기관이 통·폐합되거나
소관 업무의 일부가 소속 장
관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와 「공무원 인재개발법」
에 따른 교육훈련 및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시보 임용 중에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1. ~ 5. (생략)

<신설>

6.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4급 이
상 공무원이 역량평가 실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에 따른 응시요건을 갖추지 아
니하여도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 경력
(제6호의 경우 4급 이상에서 경
력만 해당한다)-----

-----.

-----.

1. ~ 5. (현행과 같음)

6. 국정과제 등 주요 국정 현안
과 관련하여 행정협업과제를
수행한 경력으로 인사혁신처
장과 협의를 통해 인정된 경
력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

----. ---- 제4호-----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 2. (생략) <u><신설></u> <u>3.</u> (생략) ③ (생략)	----- --. 1. · 2. (현행과 같음) <u>3. 제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u> <u>경우</u> <u>4.</u>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	
연 락 처	(044) 201 - 8327